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중복되거나 인용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중복내용 및 용어 정비 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20조)
 -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중복표현 정리
 - 행정용어 순화(선급 → 미리 지급, 이식증대 → 이자증대)
- 관련 법령 및 조례 명칭변경 (안 제5조제3항, 제20조제4항)
 - 「공사채등록법」 →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 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공채 상환 시 만기후 이자 적용금리 명시 (안 제10조제3항)
 - 공채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이자지급 시 적용금리 명시
- 사군 용자 시 용자대상 명확화 (안 제15조제2항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
- 기금 상환 연체 시 적용 이율 명확화 (안 제19조제1항)
 -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→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, 인용 법·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·문구의 정비를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에서는, 목적 규정에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을 적시하여 조례 내용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임.
- 안 제5조제3항에서는, 인용 법명을 현행 「공사채등록법」에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한 것으로,
 - 이는 「공사채등록법」이 2019년 9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것임.
- 안 제10조제3항은, 공채 상환개시일(5년 거치 후 일시상환)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 지급할 경우, 이자율을 도지사로부터 공채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,
 - 공채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까지의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상 불분명성을 해소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15조제2항은,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과 관련해 시·군에 용자할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토록 명시한 것으로,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,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는 지방채(차입금)에 해당되는 바,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.

□ 지방재정법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
4. 지방채의 차환
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7조(지방채의 종류)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채증권 :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2. 차입금 :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정부·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(현물차관을 포함한다)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- 안 제19조제1항은, 융자금의 상환 연체 시 연체대출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현행 “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”로 규정된 것을 “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”로 개정된 것으로,
 - 현행 조례에서는 연체대출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불명확성으로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.
 - 이에 기금 상환 연체 시 적용 이자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타당함.
 - 같은 조제2항에서는,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과 관련해, 다음날 납입하도록 한 규정이 현행 공휴일이었던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함.

- 이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, 도민의 이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.

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2.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3. 1월 1일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5. 삭제 <2005. 6. 30.>
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7. 5월 5일 (어린이날)
8. 6월 6일 (현충일)
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- 10의2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- 안 제20조제4항에서는, 인용조례명을 개정한 것으로,
 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2020년 12월31일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그 밖에 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20조제3항에서는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.
 - (현행) “선급한다” → (개정) “미리 지급한다”
 - (현행) “이식증대” → (개정): “이자증대”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, 인용 법·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·문구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